

瑞山市青少年指導委員委囑에 관한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1. 審 查 經 過

- 가. 提出日字 : 1999. 5. 18
- 나. 提出者 : 瑞 山 市 長
- 다. 回附日字 : 1999. 5. 18
- 라. 上程日字 : 1998. 5. 25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社會女性福祉課長 崔鎮珏)

가. 提案理由

-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어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 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지도위원의 임무는 청소년 건전생활지도,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지역사회안의 청소년 유익환경조성,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 활동등임.
- 지도위원수는 읍·면·동별로 10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지도위원의 청소년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시, 읍·면·동 단위로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동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위임규정에 의거
 - 서산시 청소년지도위원 자격, 위촉절차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내용, 형식등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청소년 지도위원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비행청소년선도등 청소년의 건전생활지도를 위해서 필요한 조직인 만큼
 -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을 위한 이 조례안의 제정이 늦은 이유와 그동안 청소년 선도업무를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6. 審査結果 : 원안대로 가결

의안번호	제 65호
의결년월일	1999. 5. 26. (제 39 회)

서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9. 5. 18.

서산시 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65 호
----------	--------

제출년월일 : 1999. 5. 10⁰
제 출 자 : 서산시장

1. 제정이유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나. 청소년 건전생활 지도 등 지도위원의 임무를 정함(안 제4조).
- 다.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인 이내로 함(안 제5조).
- 라.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마.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읍·면·동, 시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지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기 타

- 가. 관련 지시문서
 - 청소년기본법개정에 따른 표준안 관련건통보(청소년 82501-300('96. 5. 27))
- 나. 입법예고 결과
 - 예고기간 : '99. 3. 25 ~ 4. 15
 - 예고결과 : 의견없음.

서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라 한다)의 자격·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동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안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중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중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 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시·읍·면·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서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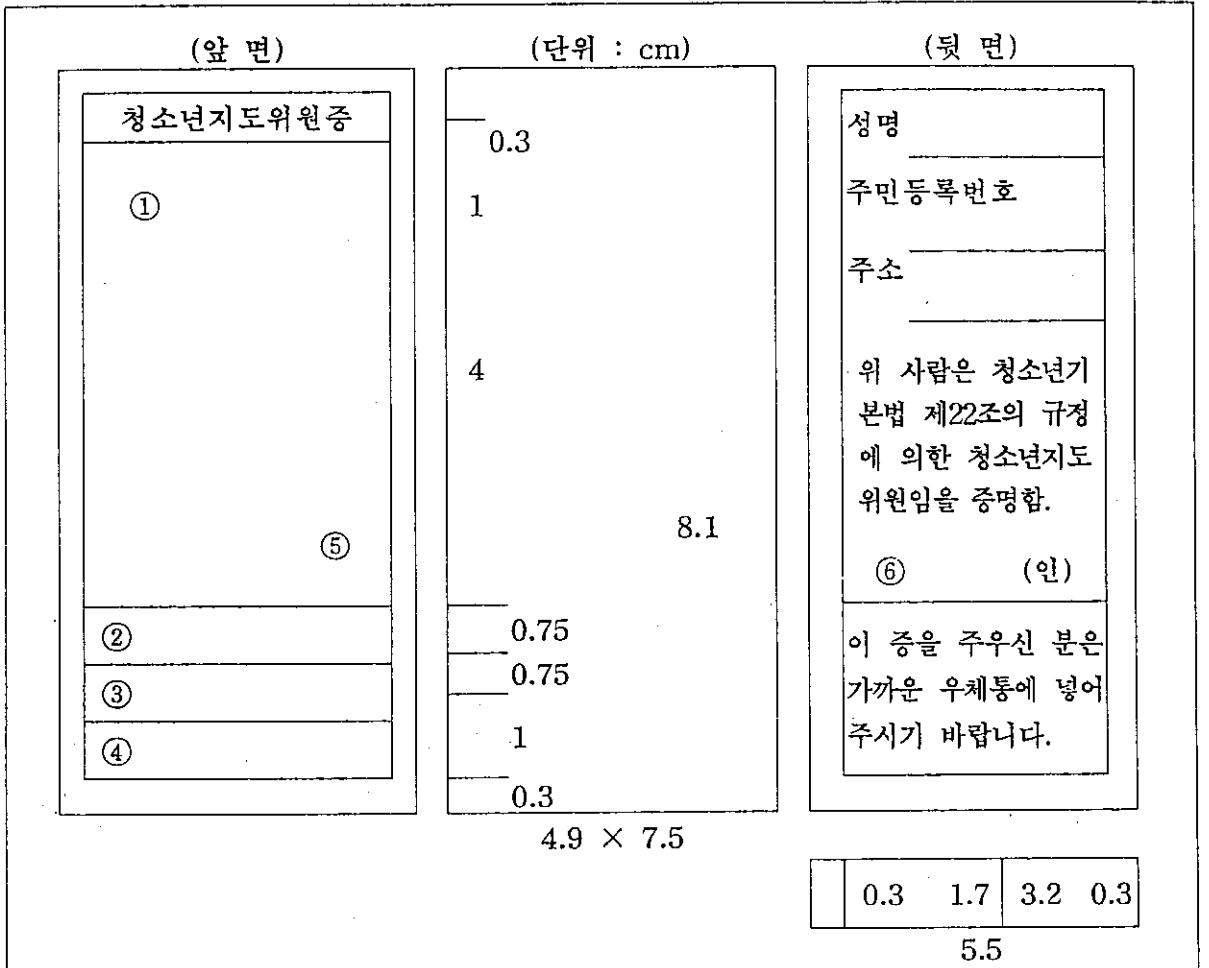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6조관련)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m²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 ① 사진(4.9cm × 4cm)
-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 ③ 성명
- ④ 소속기관명
-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 ⑥ 발급기관장의 명의 및 직인